

북한 민속종교의 변화와 현재

연구책임자: 강정원(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연구원: 최학락(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오성희(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인경(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김진선(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025. 2.

목 차

1. 서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 방법	4
2. 북한 미신 정책의 전개와 실태	6
1) 미신타파의 담론	6
2) 미신행위 관련 법	9
3) 단속의 실상과 한계	11
4) 유교식 제사에 대한 입장	13
3. 북한 민속종교의 전문가	15
1) 민속종교 전문가의 유형	15
2) 장마당 시대 이후의 경향	19
4. 북한 민속종교의 향유자	21
1) 유교식 제사의 전승	21
2) 미신의 보편성	23
3) 장마당 시대 이후의 경향	26
5. 결론	28
참고문헌	31

1. 서론

1) 연구 목적

기존 북한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괴리된 공식 종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배경으로 실천되는 민속종교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삶의 현실에서 괴리되지 않는 종교적 실천의 기능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민속종교’는 종래의 ‘민간신앙’을 대신하는 용어로 가정신앙, 마을신앙, 무속, 점복, 금기, 풍수 등 민간에서 전승되는 예언, 치유, 예방, 구복 등의 의례적 지식과 기술을 포괄할 수 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소위 ‘세계종교’ 혹은 ‘제도화된 종교’ 내지 ‘합리화된 종교’와 대비되는 ‘전통적 종교’ 또는 ‘실용적 종교[practical religion]’의 범주에 상응한다.¹⁾ 궁극적 존재에 대한 경험이나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구체적 현실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고전적 ‘주술’의 범주로도 수렴될 수 있다. 19세기 근대적 종교의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주술에 대한 부정적 함의는 20세기 후반 서구의 편협한 성스러움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찰되었고,²⁾ 이후 주술은 하등한 종교가 아닌 주술-종교로 평준화된 보편적 종교의 범주에서 연구되어 왔다. 혹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고유의 논리와 작동의 양식 및 평가의 기준을 갖는 주술과 근대의 정치나 광고 또는 고도의 기술 사이 연속성에 대한 논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³⁾

한편 동시대 한국의 민속종교는 위에서 열거한 민간신앙의 영역들 외에 유교식 조상제사의 영역을 포함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이래 유교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강등되며 주로 민간의 전승으로 존속하게 되었고, 오늘날 남한에서 유교식 제사의 실천은 실로 ‘유교민속’의 개념 아래 다루어지고 있기도 하다.⁴⁾ 북한에서 역시 체제의 이데올로기에서 주변화된 민속종교의 양상으로 계승되어 왔다.⁵⁾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전통 사회에서 상호배타적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던 유교와 무속이 하나의 주술-종교적 자장에서 연결될 수 있었음을 밝힌 최근 한국 종교 연구의 성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오늘날까지 남한의 무속적 진단에서 종종 유교식 조상제

1)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Leach, Edmund, 1968, *Dialectics in Practical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Douglas, Mary,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Evans-Pritchard, E. E., 1965,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3) Tambiah, Stanley J., 2017(1966), “The Form and Meaning of Magical Acts,”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7(3): 451-473; Taussig, Michael, 1993, *Mimesis and Alterity: a Particular History of the Senses*, New York: Routledge.

4) 임재해 외, 2006,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국학진흥원; 심일중, 2017, 『유교 제례의 구조와 조상관념의 의미재현: 제수와 진설의 지역적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5) 김종균, 2023, 「북한 제례 문화의 현재 양상과 변화의 의미」,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 3』, 민속원: 64-89.

6) 강정원, 2020,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세계 - 한국종교와 민속종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1: 7-45; 한승훈, 2020, 「전근대 무속 담론과 민속종교에서의 유교와 무속의 관계」, 『민속학연구』 46:

사를 제대로 지내고 있는가의 여부가 확인되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유교식 조상제사가 다른 민속종교의 영역들과 접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되어 오고 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민속종교는 따라서 기존 민간신앙의 영역들에 유교식 조상제사의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범주로 구성되며, 그러한 범주로서 식민지 시대 조선의 민간신앙을 정의했던 ‘귀신신앙’과 연속성이 지적될 수 있다. 귀신신앙은 조선인들이 “의지하고 귀의할 수 바탕”으로 조상숭배의 사상과 가정의 애착 관계에서 배양되며, 진보적 사상과 기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제거되기 힘든 기층 문화로 평가되었다. 특히 많은 질병의 원인을 조상을 포함한 다양한 귀신들에게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제거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이 경고되기도 했다.⁷⁾ 남한에서 새마을운동기 의료기관의 보급과 ‘미신타파운동’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귀신신앙을 계승하는 민속종교의 실천은 지속되었다. 21세기 들어서는 종교자유주의적 견지에서 사적으로 향유 가능한 종교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북한에서 민속종교의 실천은 아직까지 정치적 함의를 수반하는 일종의 저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체제는 급진적 과학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수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의존을 이념의 기반으로 삼아 왔다. 인민들 사이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수령과 인민 사이 수직적 관계로 통합된 사회적 정의는 조직생활이나 생활총화와 같은 일상적 정치의례의 수행으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복구되며 환기되어 왔다. 그렇게 정치화된 북한의 사회적 장에서⁸⁾ 민속종교의 실천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반하는 도덕적이며 경제적 타락의 징후로서 줄곧 ‘미신’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재는 심지어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반동사상문화’의 일종으로 단속되고 있다.⁹⁾

그러나 북한에서 미신에 대한 통제는 불완전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고, 실상 어느 정도 묵인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이나 기업체 간부 등 고위층의 가정에서도 미신을 신봉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따라서 미신에 대한 단속은 보여주기 식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민속종교가 미신이라는 체제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면 그렇게 판단되는 종류의 행위를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는 경향을 드러낸다.¹⁰⁾ 유교식 제사의 경우 분단 초기 상장례가 봉건 시대의 허례허식이자 미신적 요소로 비판된 적은 있지만, 이후 적극적 금지나 탄압의 정책이 실행된 적은 없었다. 북한 체제는 유교식 조상제사에 대해 줄곧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던 것으로 평가된다.¹¹⁾

본 연구는 북한의 민속종교 자체에 대한 고찰에 앞서, 그러한 위반 내지 묵인의 양상으로 민속종교가 실천될 수 있는 독특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다. 이는 미신의 단속이나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 증언은 물론 미신과 관련된 체제의 담론과 미신의 처

57-85.

7) 무라야마 지준, 1990[1929],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 동문선, 12쪽.

8) 정향진,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149-178.

9)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제정으로 미신의 전파는 ‘성록화물, 색정’의 전파와 함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반동문화사상 범죄의 일종으로 규정되었다.

10) 강정원, 2023, 「북한의 조상과 점사 종교」,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 3』, 민속원: 14-64.

11) 김종균, 앞의 글.

별과 관련된 법령 등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 민속종교의 변화와 현재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서 민속종교가 실천되는 방식을 조건지어 온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서 소위 ‘장마당 시대’ 이후 민속종교의 변성이라는 상황에 주목한다.¹²⁾ ‘장마당’은 말그대로 장이 열리는 장소를 가리키는 동시에 20세기 말미 농민 시장의 변형으로 부상한 새로운 경제의 작동을 가리킬 수 있다. 198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오직 보조적 물물교환의 장소로 허용되던 농민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물품들이 매매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시장은 점차 보조적 기능을 넘어 북한 경제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북한 주민들은 ‘장사만이 살 길’이라는 암묵적 구호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앞세워 당국의 통제에 저항하고 있었다. 당국은 장마당 경제의 마비가 곧 국가 경제의 마비를 의미함을 깨닫고 그 비공식적 경제의 작동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¹³⁾

장마당 시대 민속종교의 변성은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새로운 종류의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으로 접근될 수 있다. 농촌의 삶에서 도시 소시민의 삶으로 기반을 옮긴 남한의 무속 의례 대부분이 재물을 약속하는 재수굿이 되어버린 것처럼,¹⁴⁾ 그것은 나아가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종이 수반하는 새로운 종류의 욕망을 반영하는 현상으로도 접근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마당 시대 각자도생하게 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종교적 실천의 양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경제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정초하여 북한 민속종교의 변화와 현재를 전문가와 향유자라는 두 가지 주제의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북한 민속종교 관련 문헌 및 DB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병행되었다. 여기서 DB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2018년-2022년에 걸쳐 구축된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통일한국 토대구축을 위한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구축 연구단, 연구책임자 강정원)의 민속종교 관련 구술 자료들을 가리킨다. 주로 『종교와 민간신앙』의 주제 아래 「무속」이나 「미신」, 「가정신앙」 등의 항목으로 분류된 120여 건의 구술 자료에서 민속종교의 전문가와 향유자 및 단속이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수집되었고, (DB에 삽입된) 지역과 시대 및 계층의 차이를 반영하는

12) 엄현숙, 2022, 「북한 사회 미신행위 특성 연구: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종교학회』 13: 157-181.

13) 동용승, 2010, 「최근 북한 장마당 실태와 식량난」, 『北韓』 465: 134-141; 이애란, 2008, 「북한 사회주의와 장마당 실태 - 장사만이 북한에서 살 길이며 통제가 강화되는 북한 장마당」, 『北韓』 433: 106-112.

14) Kendall, Laurel, 1996, “Korean Shaman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merican Anthropology* 98(3): 512-527.

북한 민속종교 연구의 기초 자료로 재조합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북한 민속종교에 대한 일반적 진술들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문헌은 『로동신문』, 『천리마』, 『조선녀성』, 『조국』, 『민족문화유산』 등 북한의 정기 간행물에 수록된 민속종교 관련 기사들이나, 남한에서 북한의 형법 연구 또는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소개된 미신행위의 처벌과 관련된 법령의 조항들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민속종교의 실천이 언제나 은밀한 위반이나 저항의 일종으로 감행되어야만 하는 북한의 사회적 분위기 및 시대적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되었으며, 미신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의 담론이자 통제되지 않는 미신의 변성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과의 면담조사는 민속종교의 전문가 4인과 향유자 11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에서 ‘점쟁이,’ ‘미신재(미신쟁이)’ 혹은 그저 ‘보는 사람’ 등으로 일컬어지는 민속종교의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지역의 구분과 관계 없이 최우선적으로 모집하였다. 민속종교의 향유자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나머지의 연구참여자는 평안도와 황해도, 다음으로 함경도 출신을 우선적으로 모집하였다. 최신의 경향을 검토하기 위해 2010년대 후반 탈북한 연구참여자 2인을 포함시켰다.

자료식별번호	조사날짜	출생연도	성별	지역	구분
I-1	2024/07/24	1976	여	함경북도 도시	전문가
I-2	2024/07/25	1976	여	평안남도 도시	전문가
I-3	2024/07/30	1961	여	평안남도 농산어촌	향유자
I-4	2024/08/04	1975	여	평안남도 도시	전문가
I-5	2024/08/29	1967	여	황해남도 농산어촌	향유자
I-6	2024/09/04	1965	여	평안남도 도시	향유자
I-7	2024/09/19	1961	여	양강도 도시	전문가
I-8	2024/09/25	1976	여	황해북도 도시	향유자
I-9	2024/10/07	1965	여	평안남도 도시	향유자
I-10	2024/10/09	1972	여	평안남도 농산어촌	향유자
I-11	2024/10/10	1984	여	평안남도 도시	향유자
I-12	2024/10/21	1971	여	함경북도 농산어촌	향유자
I-13	2024/10/23	1983	여	함경북도 농산어촌	향유자
I-14	2024/10/31	1996	여	황해북도 도시	향유자
I-15	2024/11/04	2001	남	양강도 도시	향유자

<표 1: 면담조사 자료 목록>

향유자 집단에 대한 지역적 선호는 DB 자료의 분석에서 시사된 소위 ‘강신무’ 계통의 전통적 무계(巫系)나 의례가 전승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전략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에서 파편화된 양상으로 인해 서울·경기 지역 강신무의 전통과 유사한 일부 요소들이 확인될 수 있었을 뿐이다. 민속종교의 전문가로 모집된 4인은 실상 민속종교의 전문가로 생업을 영위했다기보다, 본문에서 언급될 장마당 시대 증식한 민속종교의 준전문가 - 지인들에게 또는 장거리 버스나 기차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반 정도 재미 삼아 점을 봐주는 -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민속종교 전문가의 구체적 형상은 여전히 민속종교 향유자들의 증언을 경유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다만 가족 구성원이 민속종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DB 자료에서 도출된 일련의 경향들이 보다 일반적이며 구체적 양상으로 확인될 수 있었고, 특히 민속종교 향유자의 입장에서 내밀한 기억들로 풍부하게 뒷받침될 수 있었다.

2. 북한 미신 정책의 전개와 실태

1) 미신타파의 담론

민속종교의 영역들 중 유교식 조상제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조선시대 ‘미신’이라기보다 ‘음사(淫祀)’로 비판되어 왔다. 사전(祀典)에 규정된 정사(正祀)의 범주에서 이탈한 음란한 제사들을 아우르는 범주로서 음사의 문제는 특히 무속과 연루된 왕실이나 도성 인근의 민속종교적 실천에 대한 비판의 담론으로 제기되었고, 종종 적극적 혁파를 요청하는 상소의 형식으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의 음사와 근대의 미신 개념 사이 연속성이 지적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차이도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정사와의 대비에서 음사는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 주체와 대상 사이 관계의 적절치 않음이 비판되었던 것이지, 제사라는 행위나 제사를 받는 대상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미신에는 정사/음사와 전혀 다른 종류의 구분으로 19세기 유럽에서 과학과 함께 부상한 종교/주술의 구분이 함축되어 있다. 특히 서구 기독교 근대의 계보에서 미신은 내면적 의미나 공동체적 윤리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나쁜 종교’일 뿐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현실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나쁜 과학’이라는 이중의 부정적 함의를 수반하게 된다.¹⁵⁾

한국에 도래한 근대적 미신타파의 담론은 20세기 초반 식민지 당국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언론에 의해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해방 이후로는 냉전의 진영을 반영하는 분기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특히 개신교가 득세했던 20세기 후반의 남한에서 미신이 여전히 ‘나쁜 종교’를 거르기 위한 개

15) 김동규 2012,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타자(alterity)로서 무속의 창조과정」, 『한국문화연구』 23: 283-322; Kendall, Laurel, *Shamans, Nostalgias, and the IMF: South Korean Popular Religion in Mo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념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면, 북한에서 미신의 기준은 민속종교뿐 아니라 종교 일반 - ‘인민의 아편’ - 을 포함하는 보다 급진적 관점으로 적용되었다.¹⁶⁾ 사회주의적 이상에서 애당초 ‘좋은 종교’란 없고, 과학에 의해 극복되어야만 할 봉건시대의 잔재가 있었을 뿐이다.¹⁷⁾ 1950년 3월 『로동신문』의 기사 「진보적 과학지식 보급하여 잔존하는 미신타파에로」에서 기후제의 효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창조론이 진화론으로 극복되어야만 하는 미신타파의 기초가 확인될 수 있다.

철산군 당부에서는 군내 농민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더일층 보급하기 위한 강연사업을 각농촌에 조직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부에서는 지난 1월 16일에 유능한 당 선전원 7명을 소집하여 “과학과 미신”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조직하여 충분한 준비로써 각농촌에 파견하였다... 아직도 일부 농민들이 ###을 #기고 귀신이 노한탓이라고하여 “푸닥거리”를 하는 것과 비가 안내리면 매번 기후제를 하는 것 등 미신에 대하여 철저히 비판분석하며 무당 풍수 점쟁이들은 환자와 재난자를 속여 먹자는 건달꾼이라고 폭로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다... 김원백 농민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혼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나고 물었다. 김정#동무는 인간도 처음에는 하층동물에서부터 발전변화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의 과정을 설명해주었다... 앞으로 철산군 당부에서는 “천체의 기원” “인류의 기원” 등에 대한 과학강연을 계속 진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¹⁸⁾

북한에서 소위 ‘5대 혁명연극’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황당> 역시 단지 민속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 일반에 대한 풍자이자 극복의 서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20년대 후반 김일성에 의해 처음 창작되었다는 연극은 원래 성황당 나무에 어느 부인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차려 놓은 음식을 굶주린 나무꾼이 받아 먹는 상황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소박한 단막극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직접 참여한 5년 여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78년 화려한 장막극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굶주린 나무꾼 대신 어느 마을 지주의 머슴으로 분한 주인공이 야학을 다니며 미신의 허상을 깨닫게 되고, 이후 기지를 발휘해 미신을 숭상하는 마을 부인뿐 아니라 재물을 탐하는 지주와 무당, 각자의 믿음에 함몰된 전도부인과 중 등 여러 인물의 위선 내지 어리석음을 폭로한다는 내용이다.¹⁹⁾ 특히 1979년 영화로 촬영된 작품이 텔레비전에서 반복적으로 상영되며 (제작의 의도와 얼마간 무관하게) 북한 주민들이 민속종교의 전통적 형식에 대한 담지하는 심상의 원천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 장석만, 2015, 「식민지 조선에서 “문명-문화-종교”의 개념적 네트워크 형성」, 『종교문화비평』 28: 215-240.

17) 통일부, 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북한 형법에 마련된 미신행위 처벌의 조항은 기독교의 선교 행위 등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2014년 북한이탈주민 11,8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6%가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했다.

18) 1950년 3월 19일 『로동신문』 2면, 「진보적 과학지식 보급하여 잔존하는 미신타파에로」. #’는 참고한 복사본에서 식별 불가능한 글자들을 대체한다.

19) 박덕규·김미진, 2010, 「북한의 혁명연극 <성황당>론」, 『한국문예창작』 9(2): 165-190. 배성국, 2017, 「북한 문예이론과 북한 연극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연극학과 석사학위논문.

한편 미신타파의 담론이란 측면에서 1978년 연극 <성황당>을 통해 체제가 스스로를 재현하고자 했던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극의 초입에 삽입되는 설화에서 소개자는 이미 반 세기 전 위대한 수령이 인민의 해방을 위해 원작을 창작했던 것임을 환기하며, 그 위대한 영도 아래 종교와 미신에서 완전히 해방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음을 자랑한다.

여러분! 지금 지구 위에는 200에 가까운 나라들이 있고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와 미신이 깨끗이 없어진 나라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직 하나 뿐입니다. 영혼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서는 혁명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와 미신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도 해방되어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이 된 새형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꽃피워 주실 원대한 구상 밑에 이미 반세기 전에 혁명연극 <성황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창작공연케 하시었습니다.²⁰⁾

종교와 미신의 구속에서 이미 해방된 인민에 대한 인식은 1978년 12월 『로동신문』의 기사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에서도 재확인된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과 달리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한 및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종교와 미신은 아직까지 사람들의 의식을 “죤먹고 있다.”²¹⁾

이러한 자기 재현의 역사로서 장마당 시대 재생된 미신타파의 담론은 미신의 번성을 더 이상 봉건시대의 잔재가 아닌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침투해 오는 외생적 요인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었다. 2001년 6월 『로동신문』의 기사 「미신은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버섯」을 기점으로 미신의 위험을 경고하는 유사한 논조의 기사들이 재생산되며, 특히 2012년-2014년 사이 『로동신문』과 월간지 『조선녀성』에 빈번하게 등장한다.²²⁾

오늘날 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내부에 미신을 퍼뜨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신은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것이다... 미제가 우리 내부에 미신을 퍼뜨리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것처럼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목적도 다른데 있지 않다. 미신행위를 앞세워 제놈들의 사상문화침투를 손쉽게, 효율적으로 이루어 사람들을 부패변질시키고 사회의 불안정을 조성하며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자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류포시키려는 그 어떤 미신행위도 우리 인민과 녀성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단호히 쳐갈길 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견결히 옹호고수할 것이다.²³⁾

20) 이원희, 2000, 『북한 5대 혁명연극』, 신아, 9쪽.

21) 1978년 12월 28일 『로동신문』 2면, 「연극혁명의 빛나는 승리,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22) 2001년 6월 7일 『로동신문』 6면, 「미신은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버섯」; 2005년 7월 23일 『로동신문』 6면, 「미신은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위험한 독소」; 2013년 8월 8일 『로동신문』 5면,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소」; 2013년 8월 29일 『로동신문』 5면, 「미신이 빚어낸 참상」; 2014년 3월 2일 『로동신문』 5면, 「미신이 낳은 비참한 후과」; 2012년 2월 『조선녀성』 39쪽, 「미신은 제국주의사상문화 침투의 안내자」; 2013년 10월 『조선녀성』 33쪽, 「미신행위의 반동성과 해독성」; 2013년 11월 『조선녀성』 36쪽, 「미신행위는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소」.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문명의 시대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 침략과 랍탈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오늘도 세계도처에서는 사람들을 아연케하는 몰상식하고 비과학적인 미신행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대학주변을 중심으로 점치는 곳이 늘어나고 청년들속에서 미신행위가 급격히 증가되고있다고 한다. 이처럼 미신은 사회적존재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인 사람들을 인간의 본성적 요구와는 배치되게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 믿도록 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미신이야말로 사회와 인간을 쪼먹고 해치는 위험한 독소이며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의 안내자, 길잡이라고 할수 있다.²⁴⁾

2) 미신행위 관련 법령

21세기 북한의 매체에서 전개된 독특한 미신타파의 담론은 자체의 내용보다 미신의 광범위한 유행이라는 시대적 현상을 목도하는 체제의 반응으로 사실적 가치가 있다.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 신설된 미신행위 관련 처벌의 조항들 역시 그러한 도덕적 타락의 징후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전략으로 접근될 수 있다. 형법의 개정은 물론 단지 미신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전환 및 불안정의 양상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장마당에서는 실로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의 양상으로 외부의 검열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었고, 고난의 행군의 시기 장마당에 투신할 수 밖에 없게 된 북한 주민들 대다수의 삶을 다시 사회주의의 틀에서 수용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따라서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인 행위죄,' '적대방송청취죄' 등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조항들과 함께,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조장죄,' '매음죄,' '패싸움죄' 등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시장의 영역에서 번성하는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조항들이 신설되었던 것이다.²⁵⁾

물론 법적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북한의 형법은 1950년 제정 이래 법문의 조항이 없는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는 '유추규정'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의적 활용과 남용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유추규정에 대한 비판은 북한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고, 1987년 이후 제한적 적용의 단계를 지나 2004년 비로소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대신 여러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비롯한 구체적 범죄의 항목들이 증식하며 1999년의 개정 때와 비교해 조문수가 거의 두 배에 가깝게 확대되었다.²⁶⁾ 2004년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조장죄의 신설은 장마당 시대 창궐한 온갖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인 동시에 북한에서 형법 체계의 발달에 수반된 분화의

23) 2012년 2월 『조선녀성』 39쪽, 「미신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의 안내자」.

24) 2013년 8월 8일 『로동신문』 5면, 「사회와 인간을 해치는 독소」.

25) 권오국, 2017.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6) 한인섭, 2005.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죄형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6(1): 413-445.

산물이기도 했다.

2012년의 개정에서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조장죄 중 미신행위조장죄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2015년의 개정에서 미신행위죄의 '제2항'이 추가되었다. 2015년 개정된 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56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²⁷⁾

2022년 개정된 형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의 처벌은 기존의 3년 이상 7년 이하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²⁸⁾ 김정은 체제에서 장마당 시대 부상한 반사회주의적 범죄들은 더욱 통제되기 힘든 방식으로 확산되었고, 따라서 형법에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 '반동문화사상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특히 남한 문화의 침투를 의식한 엄혹한 법령들의 제정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제정으로 미신의 전파는 '성록화물, 색정'의 전파와 함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는 반동문화사상 범죄의 일종으로 규정되기에 이른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양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소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²⁹⁾

다른 한편 2021년 개정된 행정처벌법에서 미신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

27) 권오국, 앞의 책, 62, 128쪽.

28)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186쪽.

29) 윤철홍, 2024,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관한 소고」, 『통일과 법률』 58, 11-12쪽.

지 못한 위법적 행위로 교정될 수 있다. 그러한 경범죄의 일종으로 미신행위에는 단지 벌금 또는 3개월 내외의 노동교양이 부과될 수 있다.³⁰⁾

제305조(미신행위)

미신행위를 한 자에게는 벌금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처벌을 준다.³¹⁾

2020년대 북한에서 미신행위는 행정처벌법의 적용으로 벌금이나 노동교양으로 교정될 수 있고, 형법의 적용으로 노동단련형 내지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적용으로 무기징역 내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종류의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철저하고 정교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별개로, 관련된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미신행위가 북한에서 만연한 범죄의 유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마당 시대 이전 북한에서 미신행위가 만연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단속의 실상과 한계

북한에서 민속종교의 실천이 장마당 시대 도래한 새로운 위험과 욕망을 양분으로 변성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매체에서 선전되는 것처럼 20세기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니었다. 점복이나 치병 또는 예방의 의례에 대한 수요는 은밀하게 지속되어 왔고, 당국이 실로 이를 몰랐을 리도 만무하다. 전술한 것처럼 2004년 처벌의 조항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유추조항의 적용으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혹은 보다 온건한 통제의 양상으로 시나 군 단위에서 이름난 점쟁이의 집 주변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군이나 안전부의 요원을 배치하여 지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조치는 미신행위를 근절시킨다기보다 점쟁이의 손님이 당, 군대, 안전부(사회안전성), 보위부(국가보위성) 등의 간부 내지 그러한 인물과 인맥이 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었다.

북한에서 미신의 근절을 위한 노력들은 결코 미신탈파의 담론에서와 같은 승리의 서사로 완결될 수 없었고, ‘간부들이 보는 점쟁이’가 곧 뛰어난 점쟁이를 가리킬 정도로 고위층에서도 미신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고위층뿐 아니라 안전부나 보위부의 요원 등 현장에서 단속의 주체들 - 혹은 그 부인들 - 역시 미신의 신봉자이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절박한 상황에서 의지하게 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위부

30) 행정처벌법은 준법의식을 키워주는 교양의 수단이자 범죄에 이를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의 수단으로 2004년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다. 행정처벌의 목적은 범위반자들에게 범질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강한 자극을 주어 교양하기 위함이며, 행정처벌의 의의는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때에 법적 제재를 적용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한다(김민배, 2020, 「북한의 행정위법행위와 행정처벌법」, 『통일과 법률』 41: 107-139).

31)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186쪽.

끼고 하는 점쟁이'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신의 완벽한 근절을 목표로 하는 어떠한 중앙의 정책도 실행의 단계에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속과 처벌은 실상 미신행위가 오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 실행될 수 있는 종류의 행위라는 암묵적 규범을 환기시키며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표면상 미신이 근절된 사회적 질서의 구현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 미신의 통제가 불완전하게 작동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은 미신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대부분 뇌물로 무마될 수 있는 체제 이면의 질서에서 제공된다. 장마당 시대 이후 미신행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며 강력한 단속은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의 검열과 단속을 위한 특정 방침에 따라 조직된 '그루빠(상무, 또는 연합지휘부)'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²⁾ 2006년 황해북도 도시에서 한 그루빠의 지도원으로 미신행위 단속에 참여했던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미신행위의 집중적 단속 역시 그만큼 집중적인 뇌물의 수령을 의미할 뿐이었다. 실제로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내가 2005년도 제대해서 2006년 그다음 해 같아. 그 511연합지휘부 조성한다고 해서... “야, 내부지도원 내가 나가면 어때?” 나보고 물어보는 거야 부장이... “거기 나가면 출근 매일 안 해도 되고 또 매일 한다 해도, 야! 그 돈방석에 앉는 거야.” 단속 일 단 단속 기간이면 뇌물을 받거든요. 단속 그 자체가 돈이니까. 단속하면 무조건 돈을 뺏아내고야 보내니까... 단속을 아주 그렇게 그냥 돈 주면 모르쇠 하고 오고 돈만 받았지, 사실은. 그때는 뭐 나도 살아야 하니까, 또 저 상급에도 또 돈을 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돈 뭐 이런거 뇌물을 많이 받았죠... 이 여자는 내가 왜 보냈냐면, 내가 딱 한 명 보냈는데 뭐 마지막에 개새끼 하면서 막 달려들더라고, 사기 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그 소리 듣고 참을 사람이 어디 있어.³³⁾

그루빠의 동원과 같은 집중적 단속의 기간을 제외하면, 점쟁이들이 일상적으로 단속의 위협에 시달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지역에서 누가 점쟁이로 활동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점쟁이임을 드러내 놓고 영업하거나 따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즉각적 제재를 가하기보다 주로 동향을 주시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점쟁이는 모르는 사람에게 점을 봐주는 것을 꺼리며, 손님 입장에서는 지인의 소개 없이 점을 보기는 힘든 정도의 통제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었다. 간혹 생활이 매우 궁핍한 이들 중 점쟁이임을 드러내며 모르는 손님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을 뿐이다.

32) '그루빠'는 '상무', '연합지휘부'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북한 당국이 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5개 기관에서 인력을 차출하여 그룹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검열·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통일부, 2021, 『북한 지식사전』, 381-384쪽).

33)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72, 황해북도 도시 출신 1971년생 남성의 구술 중.

근데 웬만해서 누가 알아서 데리고 와도 거기는 잘 안 봐주려고 그래요. 와도 “아니요. 우리 그런 집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돈 들고 왔다니까” 그래도 안 봐줄 때가 많아요. 저네 먹고살기 힘들어도 보위부나 안전부 가서 구류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싫다고. 신원 파악이 잘 안 되고서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³⁴⁾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는 사람 데려가지요. 생똥 처음으로 죽어도 못 가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다 소개 있어야 가지.³⁵⁾

우리 거기서는 이제 신적인 그런 거 있으면 알려지면 잡아가요. 못 견디죠... 자기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것을 노출해서 먹고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감옥에 그냥 들락날락 해야 돼요.³⁶⁾

2000년대 초반까지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정체를 노출시키는 점쟁이는 소수에 불과했고, 그렇게 활동하며 감옥을 들락거리다 결국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³⁷⁾ 그러나 이후 점차 정체를 드러내고 영업하는 생계형 점쟁이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당국에서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님의 입장에서 점을 보는 행위가 수반할 수 있는 법적이거나 정치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점차 쇠퇴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 시대 성장한 한 황해북도 도시 출신의 여성은 전기를 몰래 따서 쓰는 문제로 보위부의 단속을 두려워 한 적은 있어도 점을 보는 문제로 단속을 두려워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³⁸⁾

심지어 2018년(戊戌年)에는 ‘미친개의 해’라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을 정도로 북한에서 미신의 창궐은 절정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부터 이미 ‘미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총살까지 할 수 있다’는 등의 포고령이 하달되었고, 2018-2019년 사이 실로 여러 지역에서 미신행위 관련자의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음이 복수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오직 무속행위의 단속을 위해 2018년 조직된 619그루빠의 활약으로 평양에서만 50여 명이 체포되어 공개재판을 받게 된 일도 있다고 한다.³⁹⁾ 지금까지의 전개에 비추어 이러한 급진적 조치 역시 단발적이며 제한적 효과만을 발휘하게 될 것임이 예측될 수 있다. 2010년대 후반 북한 미신 정책의 시급한 과제는 미신의 근절은커녕 미신이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만 행해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의 재확립이 된 것처럼 보인다.

4) 유교식 제사에 대한 입장

34) I-8.

35) I-9.

36) I-4.

37) I-3.

38) I-14.

39)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62-63쪽;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282-284쪽.

앞에서 시사된 것처럼 북한에서 민속종교의 실천은 대부분 점쟁이라는 민속종교의 전문가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모두 미신의 범주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유교식 조상제사는 ‘미신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분단 초기 상장례의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을⁴⁰⁾ 제외하면 공적 담론에서 역시 미신이라고 명백히 규정된 적은 없는 듯하다. 그렇다고 다른 무엇이라고 딱히 설명된 적도 없이, ‘하라고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 종류의 행위로 실천되며 용인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매체에서 유교식 제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 왔고, 특히 기제사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표명되고 음력설, 추석, 청명 등의 전통명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며,⁴¹⁾ 1990년대 이후 명절과 관련된 풍습이나 유래를 소개하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⁴²⁾ 현대의 풍습은 주로 민속놀이나 ‘민족요리’와 관련된 행사에 대한 기사들로 조명되지만, 간헐적으로 차례나 성묘와 관련된 언급도 발견된다. 여전히 각자의 조상보다는 당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혁명선렬’ 등의 추모를 앞세우고 있지만, 전승된 조상제사의 풍습 역시 긍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년년이 찾아 오는 추석명절이건만 올해의 추석을 맞은 우리 인민의 마음은 류다르다. 민족사에 특기할 올해의 사변들을 되새겨 보며, 오늘을 위해 당과 수령께 충성을 다한 혁명선렬들과 선배들, 먼저 간 이들을 추억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우리 인민이다... 꽃송이를 안고 대성산혁명렬사릉으로, 애국렬사릉으로 향하는 사람들, 조상들과 동지들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 혁명선배들과 조상들의 묘소를 찾은 각지 근로자들은 먼저 간 이들의 삶을 뜨겁게 추억하였으며 그들처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 갈 마음을 가다듬었다.*⁴³⁾

*가을철의 제일 큰 민속명절은 추석(한가위)이다. 추석은 우리 인민이 조상전래로 쇠여온 큰 명절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있는 민속명절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은 추석날이 오면 어느 가정에서나 성의껏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의 묘를 찾아가 추모제를 지냈다. 선친들과 친지들의 산소를 찾아 봉분우에 자란 잡초를 베고 장마비에 씻겨내린대를 손질하였으며 주위를 깨끗하게 거두고나서례의를 표하였다... 추석날을 맞으며 먼저 간 사람들을 추모하는 우리 민족의 고상한 기풍은 오늘 시대의 요구와 민족풍습에 맞게 더욱 순결하게 이어지고 있다.*⁴⁴⁾

40) 김종근, 앞의 글.

41) 1989년 음력설, 추석, 단오, 한식이 4대 명절로 휴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중국 유래설이 제기된 한식과 단오가 제외되어 2000년대 들어 청명이 한식을, 정월대보름이 단오를 대체하게 된다.

42) 1998년 11월 6일 『로동신문』 2면, 「추석에 있는 일」; 2002년 9월 22일 『로동신문』 4면,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피난다」; 2003년 2월 2일 『로동신문』 4면, 「민속명절에 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 2003년 6월 4일 『로동신문』 4면, 「우리의 것이 제일로 좋아」; 2004년 6월 22일 『로동신문』 4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대항소상> 민족씨름경기」; 2006년 1월 30일 『로동신문』 4면, 「전국 학생소년들의 민속놀이경기 진행」; 2007년 9월 23일 『로동신문』 4면, 「추석(한가위)의 유래」; 2007년 9월 23일 『로동신문』 4면, 「추석의 놀이와 음식」; 2011년 2월 18일 『로동신문』 4면, 「즐겁게 맞이한 정월대보름명절」; 1999년 9호 『천리마』 111쪽, 「추석」; 2009년 4호 『천리마』 104-105쪽, 「청명과 민속」.

43) 2002년 9월 22일 『로동신문』 4면, 「유구한 민속전통이 활짝 꽃 피난다」.

유교식 조상제사는 예전부터 미신으로 탄압된 적은 없지만 내놓을 만한 문화나 전통으로 인정된 적도 없었다. 그러다 1986년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조 아래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도 점차 민족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 혹은 민속의 일종으로 나름의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⁴⁵⁾

3. 북한 민속종교의 전문가

1) 민속종교 전문가의 유형

북한 민속종교의 전문가는 크게 ‘점쟁이/비점쟁이’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중 절대 다수를 이루는 것은 점쟁이의 유형이며, 북한 주민들은 점쟁이를 다시 크게 ‘관상으로 보는 사람(영으로 보는 사람)/책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때 ‘관상으로 보는 사람’이란 어떠한 지식의 체계로서 ‘관상학’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간혹 ‘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구분되기 한다. 남한의 감각에서는 물론 무당의 형상에 상응하며, 평안도·황해도·강원도·양강도·함경도 등지에서 역시 이들을 종종 무당이라 칭하고 있다. 점쟁이의 유형 가운데 절대 다수를 이루는 이 유형은 점을 볼 수 있게 된 계기에 있어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될 수 있다.

우선 점쟁이 중 소수를 이루며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도 보이는 ‘책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책으로 보는 사람이란 남한에서 주로 ‘철학관’이라 구분되는 장소에서 활동하는 점복의 전문가에 대응될 수 있다. 즉, 당사주(唐四柱) 또는 토정비결(土亭秘訣)과 같은 이론 체계에 생년월일을 대입하여 점괘를 도출하고 해석하는 이들이다. 북한에서는 그러한 행위 역시 미신행위의 일종으로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유형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다. 우선 은밀하게 그러한 지식의 체계를 전승하는 문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했고, 다음으로 한문으로 씌여진 그 문서의 해독이 가능해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서는 분단 초기부터 (북)한글 전용 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따라서 소수의 ‘한문책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유형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

평안남도 도시 출신의 한 1970년대생 여성은 친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한문책 10여 권을 둘째 작은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다고 한다. 작은아버지는 마을 훈장이던 할아버지로부터 책을 물려 받았고, 다음 세대 자손들 중 사주가 맞는 그녀를 택해 어린 나이부터

44) 2007년 9월 23일 『로동신문』 4면, 「추석(한가위)의 유래」.

45) 다만 이와는 역행하는 경향으로 대략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사이 함경북도 농촌 지역에서 조상제사가 금지되어 숨어서 지내야만 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있었다(I-12, I-13). 위와 같은 정책과 담론의 전개는 물론 다른 시대와 지역의 일반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식량난에서 비롯된 지역 당국의 조치였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엄격하게 학습시켰는 것이다. 조카에게 점쟁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귀중한 유산을 지켜내라는 의미에서였다. 책은 실물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권씩 내용을 손으로 옮겨 적었고, 작은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한자와 뜻풀이를 배웠으며, 집에 돌아와 내용을 암기해야 했다. 책은 평소에 김칫독에 보관하다가 공부할 때만 꺼내서 봤다. 그렇게 20살 무렵까지 공부했지만 북한에서 점쟁이로 생업을 영위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지인들에게 재미 삼아 점을 봐주었고, 장마당 시대 이후로는 장사를 다니며 기차에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다 남한에 정착하여 비로소 철학관을 운영하게 되었다.⁴⁶⁾

그러나 이처럼 정립된 이론의 체계가 온전히 전승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며, 불안정한 물질적 전승의 기반과 한문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더욱 드물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계통의 지식은 일반적으로 보다 느슨하며 파편화된 양상으로 유포되어 있었고, 이 경로에서 일부 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활용되고 있었다.⁴⁷⁾ 이에 어떤 북한 주민들은 생년월일을 묻는 점쟁이는 진짜 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는 ‘영으로 본다’와 ‘책으로 본다’의 경계가 애당초 설정되기 힘든 경우도 있는데, 점복과 관련된 지식을 전승하는 오래된 책 자체가 일종의 영물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여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물을 획득한 사람은 책으로 보는 사람이라기보다 영으로 보는 사람의 일종으로 구분될 공산이 크다.

남한에서처럼 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신이 내렸다’거나 ‘신이 들렸다’라고도 하지만, 북한에서 보다 관용적 표현은 ‘신을 업었다’가 될 것이다. 오늘날 남한에서 신이 내린 사람이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는 과정은 얼마간 표준화되어 있고, 심지어 과도한 상업화가 지적되고 있다.⁴⁸⁾ 반면 북한에서 신을 업은 사람이 점쟁이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례적 변형의 절차는 없다. 여전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신을 업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며, 그 양상은 식민지 시기 조사된 조선 무격(巫覡)의 입무(入巫) 내지 성무(成巫)의 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⁴⁹⁾ 그 연장선에서 20세기 후반 이후 북한에서 신을 업게 되는 계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병형: ‘신병(또는 巫病)’이란 시베리아 샤먼은 물론 한국 강신무의 고전적 증상으로 입무 후보자가 겪게 되는 심리-생리적 현상들을 가리킨다. 일련의 정신병적 징후들뿐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신을 모시게 되는 유형을 신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병은 단지 입무의 단계에서 겪게 될 뿐 아니라, 이후 무업(巫業)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재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도 전형적 신병의 증상을 계기로 신을 업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

46) I-2.

47) 남한 무당들 역시 무업(巫業)의 전략으로 종종 사주풀이의 기초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김동규, 2017, 「현대 무속 세계관의 설득구조: ‘운세’와 ‘신령’의 결합」, 『한국학연구』 61: 41-69).

48) 이용범, 2006, 「근대의 한국무속」, 『한국무속학』 11: 37-65; 장순범, 2016, 『입무굿으로 본 황해도 굿의 정체성』, 안동대학교대학원 민속학과 박사학위논문.

49) 무라야마 지준, 2014[1932], 최길성·박호원 역, 『조선의 무격』, 민속원;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아카시, 1991[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안남도 농촌의 한 처녀는 어머니가 신을 업은 사람이었고, 자신도 할머니신을 모신다고 하는 동네에서 이름난 점쟁이였다. 20살 무렵부터 정신이 이상해지고 몸이 심하게 아팠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을 보게 되었다.⁵⁰⁾

- 황해남도 어촌의 한 애기 엄마는 남편이 바다에서 잠부수로 인해 생활이 궁핍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점이라도 보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 손님을 받았고, 그마저도 두꺼운 솜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 있었다.⁵¹⁾

- 평안남도 도시의 한 중년 여성은 40살 무렵에 한 번 미쳤던 적이 있다. 정신 착란적 증상을 보이며 온 동네를 배회했고, 그러다 사람을 마주치면 갑자기 여러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후 점쟁이가 되었는데, 특이하게 점을 볼 때 손님의 맥을 짚었다.⁵²⁾

㉠영물의 획득형: 죽은 무당이 사용하던 방울, 부채, 점구, 또는 그림이나 조각으로 된 신체(神體) 등을 땅에서 개념으로써 영적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미 신병을 겪는 와중 그러한 영물을 획득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갑자기 꿈에서 계시를 받아 획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남한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진 유형인 듯하지만, 북한에는 아직 꿈에서 계시를 받은 장소에서 책이나 침구(鍼具) 등을 발견하여 신을 업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 양강도 도시의 어느 중년 여성은 시집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 죽은 시할아버지(혹은 시아버지)가 나타나 어느 장소로 가면 자신이 쓰던 물건이 있으니 찾아서 쓰라는 말을 들었다. 그 장소에는 실제 오래된 책 한 권과 베천에 싸인 모종의 물품이 묻혀 있었고, 그것들을 획득한 이후 점쟁이로 활동하게 되었다.⁵³⁾

- 황해북도 도시의 어느 6-7살 정도 된 아이는 꿈에서 어느 산의 뒷편 어딘가를 파 보라는 말을 들었고, 부모가 실로 그곳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찾아 냈다. 처음 점을 보는 손님에게는 어머니가 먼저 아이가 그렇게 신을 업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그 책을 펼쳐서 보여줬다. 책은 그림에 짙막한 한문이 덧붙여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송장 냄새가 풍겼다고 한다.⁵⁴⁾

- 제대 군인으로 당원이 된 어느 젊은 남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점쟁이로 활동하였다. 아직 군대에 있을 때 그를 유난히 아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그의 꿈에서 나타나 어느 묘지 옆을 파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거기서 발견된 단지 안에는 한문으로 씌여진 오래된 책 한 권, 안경 한 쌍, 그리고 대나무통에 침이 몇 개 들어 있었다. 한문을 모르지만 안경을 쓰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점복을 행하였고, 또한 침혈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대나무통에 잠겨 있던 침으로 침술을 행하기도 했다.⁵⁵⁾

50) I-3.

51) I-5.

52) I-10.

53)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93, 양강도 도시 출신 1956년생 여성의 구술 중.

54) I-14.

㊤생계형: 20세기 초반부터 특히 경성 등 도시 지역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 중에 생계의 수단으로 무당이 되는 소위 '생업무'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생업무는 다른 한편으로 최소한 고려시대 이래 존재해 온 점복과 독경(讀經)의 전문가로 맹인 판수의 유형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고안된 것이었다.⁵⁶⁾ 북한에서 신을 업게 되는 계기의 일종으로 생계형 역시 극도로 생활이 곤란한 처지에서 점을 볼 수 있게 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생업의 방도를 찾기 힘든 조건에서 점을 볼 수 있게 되는 유형 등을 포괄할 수 있다. 점 잘 보는 '소경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점쟁이 중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등의 인식은 일반적이며, 이따금 장애가 있는 부모의 어린 자식이 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 황해남도 어촌에는 '몽당 아저씨'라 불리는 점쟁이가 있었다. 한 쪽 발목 아래가 없어 몽당 아저씨라 불렸다.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고를 당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점을 볼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⁵⁷⁾

- 평안남도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어느 소경 할아버지 점쟁이가 있었다. 보이지 않는데다 반신불수여서 반쯤 누워서 점을 보았는데, 생년월일조차 묻지 않고 손님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곤 했다.⁵⁸⁾

- 평안남도 도시의 어느 중년 여성은 너무 가난하고 팔자가 사납다 보니 저절로 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한다. 그녀는 조상 중 누군가 먹고살게 해주려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다.⁵⁹⁾

- 함경북도 산촌의 어느 9살 남자 아이는 인근에서 가장 복채가 비싼 점쟁이였는데, 어머니는 사고로 사지가 절단된 사람이었다. 점을 볼 때는 손님이 물은 것을 어머니가 아이에게 전했고, 아이가 웅얼거리는 소리로 내뱉는 말을 어머니가 다시 손님에게 전했다. 아이는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이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한다.⁶⁰⁾

이처럼 신을 업게 되는, 따라서 영으로 보게 되는 유형의 점쟁이들 사이에서 주목할 만한 경향은 이들이 종종 서울·경기 지역 강신무의 몸주신 내지 시베리아 샤먼의 보조령에 상응하는 조상신의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⁶¹⁾ 위에서 소개된 사례들 외에도 꿈에서 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조상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도움을 구하는 점쟁이들이 있고, '점쟁이는 도와주는 조상신이 있다더라'는 정도의 인식도 일부 주민들 사이 공유되고 있다. 자기만의 보조령 또는 몸주신을 밝혀내며 시험하게 되는 핵심

55)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63, 함경남도 도시 출신 1963년생 남성의 구술 중.

56) 무라야마 지준, 앞의 책.

57) I-5.

58)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80, 평안남도 도시 출신 1963년생 여성의 구술 중.

59) I-6.

60) I-13.

61) 이용범, 2000,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조흥운 1999,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적 절차로 내림굿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샤먼 또는 강신무가 발휘하는 영적 능력의 관계적 차원이 북한에서도 소박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라 평가될 수 있다.

이제 점쟁이/비점쟁이라는 최초의 구분에서 소수를 차지했던 비점쟁이의 유형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점쟁이는 점을 봐줄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과 규모의 민속종교적 의례들을 처방해 줄 수 있다. 이때 점쟁이가 직접 의례를 주관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점쟁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손님 스스로 은밀하게 실행한다. 비점쟁이의 유형은 단지 점을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의례의 처방보다 연행을 전문으로 하는 민속종교의 전문가로 점쟁이의 유형과 차별화될 수 있다. 물론 의례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북한의 조건에서 이들의 의례는 같은 비점쟁이 유형으로 남한의 세습무가 계승하는 화려하고 예술성 높은 종류의 것이 될 수 없다. 대신 이제는 사라진 동네 ‘푸닥거리 잘 하는 할머니’가 행하던 종류의 의례에 상응할 수 있다. 북한에서 비점쟁이 유형의 의례에 대한 수요가 주로 갑작스럽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도 이들은 그저 ‘상문풀이 잘하는 할머니,’ ‘상문풀이 잘하는 조산원,’ ‘액땀 잘하는 아줌마’ 등으로 칭해진다. 일례로 황해남도의 한 농어촌 지역에는 반경 30-40리에 소문난 상문풀이의 전문가로 어느 40대 여성 농장원이 활약하고 있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미신행위의 일종으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죽어가는 상황을 방관하지 못해 도와주고 마는 인정미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회고된다. 항상 허름한 옷차림에 답례로 받게 되는 쌀이나 여타의 음식물로 채워지는 보자기를 돌려 메고 다녔다고 한다.⁶²⁾

2) 장마당 시대 이후의 경향

점쟁이는 예전부터 적어도 두세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고, 그중 시나 군 단위에서 이름난 점쟁이가 두셋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8.3노동자(근로자)’의⁶³⁾ 등장 이후 점쟁이도 늘어나기 시작했다거나, 2009년 화폐개혁⁶⁴⁾ 이후 급증하게 되었다는 등 장마당 시대 점쟁이가 증가하는 일반적 추세가 여러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남한에서 IMF 시기 내림굿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회고되는 것처럼, 국가적 규모의 경제적 위기 - 고난의 행군 - 에서 비롯된 민속종교 영역의 파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점쟁이 중에서도 관상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 그중에서도 생계형이 특히 증식하게 되는 사회적 조건을 가리킨다. 장마당 시대 이후 점쟁이들 중 사기꾼이 많이 생겼다는 향유층의 인식 역시 그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고, 이에 사기꾼으로 판명된 점쟁이를 골라 당

62) I-5.

63) 1990년대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소는 할당된 계획을 충당해야만 했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이에 기업소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8.3근로자’이다(통일부, 2021, 『북한 지식 사전』).

64)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격적으로 100:1로 화폐가치를 전환시키는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국정가격이 시장가격을 결정하도록 되돌림으로써 확산되는 시장을 억제하고 공식적 경제의 영역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당국이 비공식 경제의 역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동용승, 앞의 글).

국에 신고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고 한다.

점괘가 맞지 않는다고 점쟁이를 신고하는 손님의 행태는 한편 장마당 시대 달라진 점쟁이와 손님 사이 관계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마당 시대 증식한 생계형 점쟁이가 대부분 스스로 점쟁이임을 드러내고 모르는 사람도 손님으로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면, 전술한 것처럼 보다 고전적 유형은 자신이 점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며 모르는 사람을 손님으로 받지 않았다. 후자의 조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관계는 동네 점쟁이와 그 동네 또는 옆 동네 사람들 사이 이미 형성된 관계에 덧붙여지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관계의 양상에서 점괘가 맞지 않는다고 점쟁이를 신고하는 손님의 행태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이의 호혜적 관계에 기초해 복채는 등가의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라보다 일종의 호의에 대한 답례의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뭐 옥수수 1kg 줄 때고 있고요, 감자 10kg 줄 때도 있고요. 그냥 나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서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산업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니어서. 그냥 봐주면서 “OO엄마 이거는 이렇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아이 그러면 이거라도 드시오” 뭐 이런 식으로 주지. 그게 뭐 몇 kg이다,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가격은 없었어요.⁶⁵⁾

다만 도시 지역에서 복채는 쌀 또는 돈으로만 받는 경향이 있었고, 대략 쌀 1kg 또는 등가의 현금이 한 번 점을 봐주는 것에 대한 적절한 답례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나 군 단위에서 이름난 점쟁이를 만나려면 아는 사람의 소개가 있어야 했을 뿐 아니라, 통상 그것보다 두 배 이상은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얼마 이상을 내야만 한다고 정해 놓고 있는 점쟁이는 없었다고 한다. 장마당 시대 생계형 점쟁이의 증가와 함께 이웃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한 점쟁이와 손님 사이의 관계는 이전보다 상업화되는 계기를 맞았고, 노골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며 영업하는 점쟁이들도 등장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함경북도 농촌에서조차 복채를 ‘써비’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써비’는 ‘서비스비’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써비차’에 지불하는 비용을 가리키던 것이다.⁶⁶⁾

장마당 시대에는 또한 여러 지방으로 장사를 다니며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으로도 회고된다. 이전에 떠돌이 유형의 점쟁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여러 지방을 돌며 친척집 등에 머물면서 침이나 부항을 잘 한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은근히 점까지 봐주는 부류의 점쟁이들이 있었다. 장마당 시대의 새로운 부류는 배급이 끊기며 발생한 양말이나 속옷 등 생필품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따리 장사의 형상으로, 판매를 위한 일종의 마케팅 전략으로 점을 봐줬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의 점복에 대한 답례는 곡식이나 돈이 아니라 물건을 조금 더 팔아주는 정도로 이루어졌다.⁶⁷⁾

65) I-13.

66) I-13. 피면담자가 최근 북한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이다.

또한 장마당 시대 장거리 기차나 버스에는 어김없이 점을 좀 볼 줄 안다는 누군가 나타나면 주변에 사람이 몰려 들고, 차례로 점을 봐주며 간혹 담배 등을 담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민속종교의 전문가 및 준전문가의 증식은 당연히 민속종교적 실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장마당 시대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지어 일반 주민들까지도 한글로 번역된 사주나 십이지(十二支)의 파편화된 지식을 수첩에 베껴서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 ‘주패(트럼프)’나 화투를 활용해 간단히 볼 수 있는 운수도 광범위하게 유행했다.⁶⁸⁾ 최근에는 타로 카드까지 유입되어 장마당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향유되고 있다고 한다.⁶⁹⁾ 장마당 시대 북한에서 점복은 일부 전문가가 전유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놀이문화와 같이 자리잡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차 기다리는 이런 그 노상에서 그냥 막 앉아서 불 피우고 이렇게 그 카드를 막 치면서, 주패라고 하는데 주패를 막 치다가 그 주패 신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 것은 내가 하면 안 돼요. 딴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막 한다고 그러면 막 모이는 거지, 모르는 사람도 모여서 “네 것 보자” 딱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정도라는 것은 문화가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놀이문화예요.⁷⁰⁾

4. 북한 민속종교의 향유자

1) 유교식 조상제사의 전승

북한에서 유교식 조상제사는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청명(한식)과 추석에 성묘를 다니며 망자의 기일에 기제사를 지낸다. 다만 기제사의 경우 사망 이후 3년만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대신 망자의 생일에 지내는 생일제가 남한보다 활발하게 전승되며, 사망 이후 경과한 시간과 관계 없이 계속 지내야 하는 제사로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동시에 형제나 사촌들이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고, 평소에 먹을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을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시간으로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것으로 회고된다. 제사의 형식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구조가 공유되는 한편 지역과 가정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타날 수 있었고,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여성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대에 따라서도 변화해 왔다.

67) I-5.

68) 이중 주패로 보는 운수가 보다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빨강색은 길하고 검정색은 흉하며, 숫자 중에서는 4가 최악이고, K와 Q는 길하며 J는 낡인다는 의미에서 흉하다는 등 소박한 논리로 그날의 운수를 점친다.

69) I-1. 피면담자가 최근 북한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알게 된 정보이다.

70)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74, 평안남도 도시 출신 1982년생 여성의 구술 중.

지금은 제사의 구체적 양상보다 그것이 민속종교의 영역에서 갖는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전통적 인간적 도리의 실천인 동시에 강한 기복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된다’는 믿음은 보편적이며, 딱히 미신으로 구분되어야 할 종류의 믿음으로 은폐되지도 않는 듯하다. 여전히 믿음은 상당히 진지한 방식으로 추구되었고,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지내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단지 죽은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이 잘 살게 되는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굶주린 북한 주민들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 술 한 병이라도 마련해 성묘를 다녔던 것으로 회고된다.⁷¹⁾ 반면 같은 시기 양력설과 음력설 모두에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또한 그렇게 철저한 방식으로 대접해야 조상이 계속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었다.⁷²⁾

의례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제사의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용되는 규칙 내지 금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컨대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기름 냄새를 풍겨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귀신(조상)이 기름 냄새에 감응하여 일단 집으로 돌아와야 자신을 위해 준비된 제사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빠질 수 없는 절차였다. 장마당 시대 시장에서 제사 음식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 이후로도 전(煎)이나 적(炙)류 반찬 하나 정도는 집에서 직접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조상에게 올릴 음식을 먼저 맛볼 수 없다는 금기도 남한보다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아직까지 제사상에 올리기 전까지 절대 음식 간을 보지 않고, 전을 부칠 때 아이들이 옆에서 몰래 집어먹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⁷³⁾

이러한 금기는 조상을 노하게 만들 수 있는 제사의 부정(不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부정은 예기치 못한 물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체적 위험으로 인식되어 왔다. 황해북도 도시의 한 1990년대생 여성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제삿날 인사를 거부한 이후 간질병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어리니까 인사하는 그것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싫다고 울면서 그랬는데 이후로 언니가 병 생긴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도 막 갑자기 까무러치고 거품 물고 막 그러거든요. 저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좀 그런 계기도 있고 하니까 조상은 좀 더 잘 모시는 거 같아요.⁷⁴⁾

제사로 조상을 잘 모시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제사의 부정으로 조상을 노하게 만들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조상과 자손 관계의 중재자로 여타 민속종교의 전문가와 유교식 조상제사의 실천 사이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위 여성의 어머니도 딸을 고치기 위해 여러 점쟁이를 찾아다녔고 그들이 처방해 준 여러 의례를 행하였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황해북도 도시 출신 한 1970년대생 여성은 탈북 전 점쟁이에

71) I-1, I-6.

72) I-8. 북한에서 설은 양력으로 정착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초 아래 음력설이 전통을 부활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73) I-1.

74) I-14.

게 집안의 가장 높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처방 받았고, 평소 제사를 지내지 않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진을 찾아 혼자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다. 당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투옥되었으나, 어느 조상이 황제하게 해주는 꿈을 꾸 뒤 감옥에서 풀려나 결과적으로 효험을 보았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⁷⁵⁾ 함경북도 농촌 출신 한 1970년대 여성은 남한에 정착한 이후 따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몇 해 전 추석날 아침에 갑자기 북한에 있는 오빠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어느 점쟁이가 해외에서 누군가 따로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 오빠 가족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줬다는 것이다.⁷⁶⁾

반드시 조상과 관계의 매개자로 점쟁이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유교식 조상제사는 다른 민속종교의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실천되고 있었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산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을 한 점씩 덜어 따로 간소한 상을 차렸다. 이를 ‘미신상,’ ‘귀신상,’ 또는 ‘귀신 쫓는 상’이라 하여 무덤의 발 밑 언저리에 놓고 제사를 지냈으며, 그 음식은 음복하지 않고 땅에 묻는다 했다.⁷⁷⁾ 따로 상을 차리지 않는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제사상의 음식들을 한 점씩 떼어 땅에 묻거나 던지고 술을 바닥에 부는 등 고수례의 풍습이 제사에 병행되었다. 곳에서 곳판의 음식을 보고 몰려드는 잡귀잡신을 물리기 위해 따로 뒷전상을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원리에서, 조상의 몫으로 차려진 제물을 탐할 수 있는 잡귀잡신으로 인해 의례의 효험이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⁷⁸⁾ 혹은 가장 소외된 존재들까지 빼놓지 않고 서운하지 않게 만드는 한국 민속종교 고유의 조화의 원리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⁷⁹⁾ 북한에서 유교식 조상제사의 전승은 여하튼 ‘유교’라는 독립된 체계에 대한 매우 희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미신의 보편성

북한에서 ‘미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 민속종교의 실천은 시대와 계층과 지역을 막론하고 은밀하게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중앙당에서 관리하거나 고용했다는 점쟁이가 있다는 설이 북한 주민들 대부분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중앙당의 위선이나 부패에 대한 증언이 되기보다, 그 점쟁이가 진짜 ‘잘 보는’ 점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게 되는 듯하다. 간혹 남성들 중 점쟁이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단위로 보았을 때 북한에서 미신에 대한 수요는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략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와 달리 북한에서 미신에 대한 수요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건간상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의 무상의료는 제도상으로는 형식상으로 전국

75) I-8.

76) I-12.

77) I-9, <북한의 생활·역사문화 DB> 면담 275, 함경북도 농산어촌 출신 1951년생 남성의 구술.

78) 다만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잡귀잡신이 아닌 조상몫으로 따로 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제사상 자체가 조상의 흠향을 전제로 차려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논리에는 분명 어색한 구석이 있다. 형식이 전승되는 한편 의미가 누락되고, 그 공백을 다른 의미가 채우게 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전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있다.

79) 조흥윤, 2004, 『巫와 민족문화』, 한국학술정보.

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역량은 평양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장비와 약품의 부족으로 온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⁰⁾ 정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일부 특권층에게 국한되어 있었고, 쉽게 진단되지 않거나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낫지 않는 증상들은 으레히 ‘상문(喪門)’에 의한 것으로 진단되어 민속종교적 의례의 처방을 필요로 했다. 반드시 지방의 하층민에게만 국한된 상황은 아니었다. 평양 지역 엘리트 집안 출신의 한 1980년대생 여성은 어머니 허리의 고질적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민속종교의 의례를 행했다 하며, 상문의 병인론 역시 일종의 상식과 같이 받아들이고 있었다.⁸¹⁾ 고난의 행군 시기 그나마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마저 와해되었고, 장마당 시대 무상의료는 사실상 유상이 되었으며,⁸²⁾ 질병으로 인한 미신에 대한 의존의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미신에 대한 수요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여타 가족의 안녕 및 번성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비롯되며, 주로 여성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간부의 부인들은 특히 남편의 승진이나 자식의 진로 및 혼인 문제와 관련해 미신의 열성적 수요자가 되어 왔으며, 개중에는 좋은 날을 받아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⁸³⁾ 간부의 부인이 아니어도 여유가 있는 집은 매해 가족의 신수를 보았고, 여유가 없어도 아이를 못 낳는 문제나 남편이 바람피는 문제나 여타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 점쟁이를 찾았다.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도 사람들은 점쟁이의 자문을 구했다.

점쟁이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여전히 미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 민속종교적 실천들도 일상화되어 있었다. 액을 막는다며 문 앞에 고추를 매달아 놓는 광경이 드물지 않았고, 특히 소금을 활용한 간단한 예방이나 정화의 의례가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상가(喪家)에 다녀왔을 때나 이사갈 집 귀퉁이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밖을 나설 때나 특히 먼길을 떠날 때 작은 봉지에 소금을 한 움큼 담아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주부가 주도하여 정월대보름이나 음력 시월, 혹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돼지머리를 구해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을 경우 물론 상처람은 보다 소박해질 수 있었다. 이 또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미신행위의 일종으로 실천되어 왔기에 제물에 수반되는 말과 행동의 양식을 보고 배울 기회는 딱히 없었다. 대신 영화 <성향당>에서 무당이 비는 모습을 보고 따라했다는 사람들이 있다.⁸⁴⁾ 민속종교 향유자의 관점에서 미신타파의 서사를 위해 주조된 심상은 미신행위의 참고자료로 전도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미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 민속종교의 실천은 어떠한 종교적 믿음을 표명한다기보다 일상적 삶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동기와 계기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의 일상적 삶이 전개되는 장소 어디에나 민속종교의 향유자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네 사례는 상이한 사회적 배경에서 불구하고 북한의 일상적 삶이 일반적으로 민속종교의 향유자를 배양하는 토양이 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

80)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81) I-11.

82) 통일부, 앞의 책.

83) I-2.

84) I-6, I-9, I-10.

㉠1965년생 여성 A: 평양에서 태어나 열두 살 때까지 살다가, 고위직에 있던 아버지가 추방 - '혁명화' - 당하며 평안남도 농촌에 정착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간경변이 생겨 어머니가 밤에 음식을 차리고 어떤 의례를 했던 기억이 있다. 추방된 이후 어머니는 마음고생이 심해 자주 점을 보러 다녔고, 종종 점쟁이가 시킨 대로 밤 12시에 키질을 하면서 뭔가 물러나라고 중얼거렸다. 16-17세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가 처음 A를 점쟁이에게 데려갔다. 추방된 신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A가 성적에 비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나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25세 때 수의사인 남편과 결혼했다. 아직 새댁일 때 시할머니가 병들어 시어머니의 명에 따라 어느 '미신집'에 음식을 차려 몇 차례 가져다줘야 했던 기억이 있다. 38-39세 때는 자신이 심하게 아팠다. 청명날부터 갑자기 얼굴에 고름이 차오르며 극심한 통증을 겪었고, 페니실린을 구해다 주사를 놓으려 해도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 점쟁이기도 했지만 그저 친하게 친내던 뒷집 아줌마가 상문에 의한 증상임을 진단하고 복숭아나무 가지와 향나무 끊인 물을 활용해 직접 상문풀이를 해주었다. 신기하게 다음날 씻은 듯 회복하였고, 뒷집 아줌마와는 가끔 쌀이나 돈을 살림에 보태라고 가져다 주며 궁금한 것을 묻는 점쟁이와 단골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뒷집 아줌마 외에도 A가 살던 읍에서 이름난 점쟁이 7명을 만나보았고, 때로는 친한 친구와 함께 보았다. 정월대보름에는 돼지머리를 구해다 고사를 지냈다.⁸⁵⁾

㉡1965년생 여성 B: 평안남도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0대 후반 무렵 중앙당에서 일하던 친척 하나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일가가 함경북도 광산 지역으로 추방당했다. 어린 시절 집안은 풍족한 편이었지만, 아버지가 재가한 부인이었던 어머니는 배가 다른 B의 오빠들과 관계에서 서운한 많아 자주 점을 보러 다녔다. B와 언니도 함께 데리고 다녔는데, 딸들이 자기 팔자를 닮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점을 보러 갔던 것은 함경북도로 추방되고 아직 결혼하기 이전인 20대 초반 때의 일이다.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어느 친구 하나가 빌려가 갚지 않았고, 달리 받을 방도가 없자 친구를 망하기 위한 방법을 묻기 위해 공장 동료에게 물어 점쟁이를 찾았다. 점쟁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새끼줄을 꼬아 태우는 의례를 행했고, 그 친구는 약 10년 뒤 사망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자주 점을 보러 다니지는 못했지만, 무슨 일을 벌이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간단히 상을 차려 굴뚝 옆에 놓고 고사를 지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제삿집이나 상가집에 다녀올 때는 항상 소금으로 부정을 털었고, 먼길을 떠날 때는 소금을 몸에 지녔다.⁸⁶⁾

㉢1967생 여성 C: 황해남도 여촌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결혼해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기업소의 간부였고, 어린 시절 손이 없는 날 이사한 적을 제외하면 미신행위와 관련된 별다른 기억은 없다. 그러다 첫 아이를 낳고 7-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행상 아줌마가 친정어머니에게 아이가 운이 막혔다며 액땜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시키는 대로 아이 삼베저고리를 한밤중에 로터리에 몰래 버리고 왔다. 아이에게 나쁜 것이라면 부

85) 1-6.

86) 1-9.

모 입장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24세 때 결혼한 남편은 부모가 모두 남한 출신이라 성분도 좋지 않고 고위험 직군인 어업의 종사자여서 결혼 초부터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식량난이 닥치면서 바닷길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굶지 않고 돈까지 버는 상황이 전개됐다. 남편의 외화벌이로 1990년대 초반 등장한 1세대 ‘돈주’ 중 하나가 되었지만,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 C는 스스로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에는 미신이 예전보다 공공연하게 행해지며 돈주에게 먼저 점쟁이를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2000년대 초반 남편이 심하게 감기가 걸려 항생제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았을 때는 옆집에 사는 안전부 간부의 부인이 손수 상문풀이를 잘한다는 아줌마를 초빙해 주었다. C는 항구에서 일제 중고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해 도매상에 넘기는 돈주로 활동하였고, 동업자와 일할 경우 먼저 점쟁이에 물어 궁합을 맞춰 보았다.⁸⁷⁾

㊸1984년생 여성 D: 평남남도 도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원래 평양에 속했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남남도에 속하게 된 지역이다. 부모는 모두 귀환 제일조선인 가족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과학자로 무신론자였지만 어머니는 미신에 열성적인 편이었다. 북한에서 특별한 치료의 수단이 없는 악성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을 때 단골 점쟁이 할머니의 처방에 따라 돼지머리를 구해 주둥에 실을 올 고사를 지냈다. D가 16세 때가 되었을 때 그 할머니를 집에 불러 처음으로 직접 점을 봐주게 했다. 너무 못생겨서 시집을 잘 갈 수 있겠냐고 묻기 위해서였다.

학창 시절 어머니가 자그마한 빨간 주머니에 소금을 채워 옷핀으로 치마 안쪽에 매달고 다니게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에 있던 어떤 떠돌이 점쟁이에게 식칼을 던져 가며 D에게 액막이를 해주게 했던 기억도 있다. 또 다른 떠돌이 점쟁이는 어머니에게 D가 33살에 죽을 팔자라고 경고했다. 더 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에 다른 누군가 죽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의례를 행했고 실로 아파트에서 일주일 내에 누군가 죽었다. 대학생 때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대학 근처 점쟁이에게 사촌 오빠들의 궁합을 보러 다녔다.

10대 때는 매일 주패로 신수를 보며 놀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관계에 있던 친구 집 문지방 구석에 바늘을 꽂아 놓고 온 적도 있다.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에 이르러 처음 주도적으로 점쟁이를 찾았다. 결혼을 약속한 오빠 친구가 장사를 한다고 집안의 돈을 빌려가 소진하고 자취를 감췄던 상황이었다. 점쟁이는 결국 같이 살게 될 거라 말해줬고, 현재 남한에서 결혼해 함께 살고 있다.⁸⁸⁾

3) 장마당 시대 이후의 경향

장마당 시대 이후 미신의 번성, 혹은 민속종교의 부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배급 체계의 붕괴에서 비롯된 여러 사회적 혼란의 양상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혼란의 틈새에서 부

87) I-5

88) I-11

상한 비공식 경제가 작동하는 영역에서 기존의 지역적 경계와 사회적 위계에 균열이 야기되었고, 미신이 득세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여성 C를 비롯한 일부 황해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당 시대의 미신은 일찍이 자본주의적 경제가 발달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국경 지역에서 창궐해 비교적 청정하던 황해도 지역까지 남하해 왔다.⁸⁹⁾

이게 나라가 흥흥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뭐 점 보러 몰려 댕기고 소문이 나고. “야, 저기 저 동네 잘 보는 애가 있대” 뭐 이런 소문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요... 각자도생할 때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이제 뭐 미신밖에 없다. 그리고 그때는 국가적으로 뭔가 공급 체계가 다 무너졌을 때니까 병원에 가도 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 없이 이 사람들이 민간요법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계급이 나빠도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돈주가 되고 물주가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급이 막 그냥 영망진창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북한도 지금은 계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돈만 있으면 된다니까 지금은 자본주의야... 그게 90년대부터 이게 슬슬 북쪽에서 역량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장사꾼들이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북쪽의 물을 다 먹은 거지 황해도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신 뭐 누가 잘 본대” 그러면 와 사람들이 밀려가서 대낮에도 줄 서고 이랬다 니깐요.⁹⁰⁾

이러한 전국적 유행은 특히 장마당 경제에 투신한 북한 주민들이 마주해야 하는 일상적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미신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에서 생존이 수반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은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법적 차원의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03년 이래 장마당은 종합시장으로 합법화되었지만,⁹¹⁾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과 거래는 여전히 밀수나 밀매 등 위법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따라서 보위부나 안전부의 감시와 단속이 지속적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돈주는 돈주대로, 행상은 행상대로 변덕스럽고 악의적일 수 있는 당국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었다.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진짜 크게 봐요. 언제 막 그 이 보안서, 안전부 이런 것들이 뭐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많이 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다 숙청해 가고 막 그냥 물건을 다 싹 압류해 가요 몰수.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살 켜네. 막 그런 얘기랑 하면서 많이 봐요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잘.⁹²⁾

이게 장사 갔다가 들어올 때 증명서고 차표고 다 있어도 우리 물건을 봐가지고 이게 경찰들이 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있는 데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갖고 괜히 시비털어요. 괜히 자기네 그 짐을 비싼 물건이고 하면 하나라도 빼앗아 내려고...

89) I-5, I-8, I-14.

90) I-5.

91) 통일부, 2021, 『북한지식사전』.

92) I-11.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애라 씨 하고 그다음 소금을 꺼내가지고 콧 뿌려버리기도 하고.*⁹³⁾

행상의 경우 법적 차원의 문제는 단지 물건의 압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예컨대 2000년대 초반 나진-선봉 지구 인근 농촌 주민들은 더 비싼 값에 작물을 팔기 위해 수십 리를 걸어 통행증이 없이 전기가 흐르는 철조망을 몰래 넘어 다녀야 했다. 실로 넘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 따라서 돈이 없어 점쟁이한테 가지는 못하더라도 집에서 주패로 신수를 맞춰 안좋은 날은 반드시 걸렸다고 한다.⁹⁴⁾ 혹은 자신이 시장에 가져간 물건을 다른 사람도 모두 가져와 최하의 가격을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행방을 정하지 않고 장사를 떠날 때 돈을 벌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사람들은 점을 보았고, 부정한 기운을 막기 위해 몸에 소금을 지니고 빨간 속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었다.

장마당 시대 민속종교의 번성은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각자도생의 시대 부상한 새로운 욕망이나 가능성과도 관련되어 있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 각자도생이란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는만큼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고, 이로써 ‘성분’이나 ‘토대’ 등 국가의 엄격한 통제 아래 재생산되던 계급적 질서에서 각자의 삶이 해방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된 사례로 여성 C의 남편은 남한 출신의 부모를 둔 어부로 최하의 신분이었으나 고난의 행군기 외화벌이를 하여 1세대 돈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 C는 자신의 남편과 같은 돈주의 출현으로 기존의 계급적 질서가 ‘영망진창’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고난의 행군기 돈주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역시 돈은 미래에 대한 절실한 희망으로 새롭게 경험되었고, 새로운 종류의 질문과 관련된 미신에 대한 수요의 창출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 들어가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배고픔을 알고. 내가 언제 돈 벌까. 난 언제면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고난의 행군 들어가서부터, 고난의 행군도 한 2~3년 겪고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썼지. 그전에는 사주팔자 그 누구도 신경 안 썼어요.*⁹⁵⁾

5. 결론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배경으로 실천되는 민속종교의 변화와 현재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으로 북한에서 종교적 실천의 기능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변화와 현재의 역사적 궤적은 우선 국가의 미신 정책이라는 민속종교 통제의 맥락에서 시험되었고, 다음으로 장마당 시대라는 민속종교 번성의 맥락에서 검토되었다. 그 구체적 양상은 민속종교의 전문가와 민속종교의 향유자라는 두 가지 주제의 영역에서 나누어 고찰되었다.

93) I-9.

94) I-13.

95) I-4.

해방 이후 북한에서 전개된 미신타파의 담론에서 미신은 최소한 1970년대 후반 이후 이미 완전히 사라졌던 것으로 주장된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미신의 변성과 함께 재할된 미신타파의 담론에서 민속종교의 실천은 외부 세력의 책동으로 침투한 '제국주의사상 문화'의 일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미신행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의 조향도 유사한 시각에서 2000년대 초반 신설되었고 점차 강화되었으며 또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미신행위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빈번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감행되는 사회적 일탈의 유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전부터 미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 민속종교의 실천은 은밀히 지속되어 왔고, 단속과 처벌은 형법의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인맥이나 뇌물로 무마될 수 있었다. 미신의 통제는 실상 미신의 근절보다 미신행위가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조건으로만 실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점쟁이는 모르는 사람을 손님으로 받지 않았고, 손님은 아는 사람의 소개 없이 모르는 점쟁이에게 점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장마당 시대 이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도 영업하는 점쟁이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만큼 처벌의 위험도 분산되었으며, 미신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점차 약화되었다.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2010년대 후반 급기야 미신행위자의 공개처형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역시 보여주기식의 효과만을 발휘하게 될 것임이 예상될 수 있었다.

북한에서 민속종교의 전문가는 크게 점쟁이/비점쟁이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점쟁이 중 다시 책으로 보는 사람/관상으로 보는 사람(영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다. 그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점쟁이 중 관상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으로 곧 '신을 업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점쟁이의 유형이다. 이들이 신을 업게 되는 계기는 신병, 영물의 획득, 또는 생활의 절박함에 인한 것으로 20세기 초반 조사된 조선 무격의 입무 동기들과 연속성이 지적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강 이북 지방 강신무가 모시는 것으로 알려진 몸주신의 형상에 상응하는 조상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쟁이도 드물지 않았다. 책으로 보는 사람의 유형은 남한에서 철학관의 사주풀이 전문가에 상응하는 유형으로 전승의 기반이 점차 약화되며 소멸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주나 토정비결의 파편화된 지식이 관상으로 보는 점쟁이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유포되어 있고, 장마당 시대 이후로는 일반 주민들도 수첩에 적어서 다닐 정도로 대중화됐다. 비점쟁이의 유형이란 상문풀이, 액막이 등으로 칭해지는 치병 의례의 전문가로 의료서비스의 결핍으로 인해 줄곧 점쟁이만큼 꾸준한 수요가 있었다.

장마당 시대 급증한 것은 관상으로 보는 유형 중에서도 생계형으로 신을 업은 사람의 유형이었고, 전술한 것처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며 점쟁이임을 드러내고 모르는 손님들 상대로도 영업했다. 그러다 보니 점쟁이와 손님 사이 관계의 양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과거 단속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쟁이와 손님의 관계는 이미 친숙한 동네 이웃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복채도 값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호의에 대한 답례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장마당 시대 모르는 손님을 상대로도 영업하는 생계형 점쟁이는 반면 점 보는 가격이 아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손님의 입장에서조차 역시 모르는 사람이 이기에 점괘가 맞지 않을 경우 당국에 신고해 버리는 경우가 생겼다. 근래에는 복채를 '씨비(서비스비)'의 일종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한편 장마당 시대에는 생계형

점쟁이뿐 장사를 다니며 점을 봐주거나 장거리 기차나 버스에서 점을 봐주는 준전문가 부류의 점쟁이도 증식하였고, 나머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주패 등을 활용해 서로 신수를 봐주는 행위가 일종의 놀이문화로 크게 유행했다.

유교식 조상제사는 딱히 금지되지도 권장되지도 않는 관습으로 묵인되어 오다, ‘조선민족제일주의’의 기조 아래 1990년대 이후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도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조상이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된다’는 관념 역시 딱히 미신적이라 여겨지지 않는 관념으로 공유되었지만, 단지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말그대로 자손이 잘 살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의례로 진지하게 실천되었다. 의례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규칙이나 금기가 준수되었고, 위반될 경우 조상이 노해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질병 등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 조상과 자손 사이 잠재된 그러한 양가적 관계의 중재자로 유교식 조상제사의 실천에도 점쟁이의 개입이 요청될 여지가 있었다. 반드시 점쟁이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성묘할 때 제사상의 음식을 한 줍씩 떼서 따로 고수레를 하는 등 유교식 조상제사는 다른 민속종교의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승되어 왔다.

북한에서 민속종교의 향유자는 지역과 시대와 계층을 불문하고 존재해 왔다. 어느 종교의 추종자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일상적 삶을 토양으로 어디서나 배양되어 왔다. 의료시설에서 쉽게 진단되지 않고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낫지 않는 질병은 으레히 상문으로 의심되어 점쟁이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했다. 여성들은 남편의 승진이나 자식의 결혼이나 출산이나 연애나 여타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로 삶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점쟁이에게 이끌리게 되었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 손에 이끌려 점쟁이를 보았던 있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간혹 남자들 사이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지만, 가족을 단위로 삼았을 때 미신으로 구분될 수 있는 민속종교의 실천에 대한 수요는 북한에서 보편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족마다 소금을 활용한 간단한 예방이나 정화의 비법이 전수되었으며,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주부가 홀로 은밀하게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었다.

장마당 시대 이후 민속종교의 변성은 국가의 배급 체계가 무너진 이후 사회적 혼란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이었고, 특히 장마당에 생존을 의탁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새로운 위험 내지 불확실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이었다. 돈주이든 행상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덕스럽고 악의적인 공무원들의 시비와 단속에 대비해야 했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점쟁이에 자문하거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날짜와 방향을 정하고 부정한 기운을 물렸다. 또는 장사의 여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물리적 위험을 회피하거나, 거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은 점을 보거나 여타 민속종교의 의례를 행했다. 장마당 시대 민속종교의 변성은 각자도생의 시대 부상한 새로운 욕망이나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는 현상이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고난의 행군기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돈주가 되었고, 돈주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은 미래에 대한 절실한 희망으로 새롭게 경험되었으며, 돈을 버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종류의 미신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정원, 2020,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세계 - 한국종교와 민속종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1.
- 강정원, 2023, 「북한의 조상과 점사 종교」,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 3』, 민속원.
- 권오국, 2017,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 김동규, 2012, 「한국의 미신담론 이해 -타자(alterity)로서 무속의 창조과정」, 『한국문화연구』 23.
- 김동규, 2017, 「현대 무속 세계관의 설득구조: ‘운세’와 ‘신령’의 결합」, 『한국학연구』 61.
- 김민배, 2020, 「북한의 행정위법행위와 행정처벌법」, 『통일과 법률』 41.
- 김종근, 2023, 「북한 제례 문화이 현재 양상과 변화의 의미」, 강정원 외, 『북한의 민속 3』, 민속원.
- 동용승, 2010, 「최근 북한 장마당 실태와 식량난」, 『北韓』 465.
- 박덕규·김미진, 2010, 「북한의 혁명연극 <성황당>론」, 『한국문예창작』 9(2).
- 배성국, 2017, 「북한 문예이론과 북한 연극의 상관관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연극학과 석사학위논문.
- 심일종, 2017, 『유교 제례의 구조와 조상관념의 의미재현: 제수와 진설의 지역적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엄현숙, 2022, 「북한 사회 미신행위 특성 연구: 라캉의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를 중심으로」, 『한국평화종교학회』 13.
- 윤철홍, 2024, 「‘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관한 소고」, 『통일과 법률』 58.
- 이애란, 2008, 「북한 사회주의와 장마당 실태 - 장사만이 북한에서 살 길이며 통제가 강화되는 북한 장마당」, 『北韓』 433.
- 이용범, 2000,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 - 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용범, 2006, 「근대의 한국무속」, 『한국무속학』 11.
- 이원희, 2000, 『북한 5대 혁명연극』, 신아.
- 임재해 외, 2006, 『유교민속의 연구시각』, 한국학진흥원.
- 장석만, 2015, 「식민지 조선에서 ”문명-문화-종교“의 개념적 네트워크 형성」, 『종교문화비평』 28.
- 장순범, 2016, 『입무굿으로 본 황해도굿의 정체성』, 안동대학교대학원 민속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향진, 2020, 「북한 조직생활 의례와 사회적 장의 정치화」, 『한국문화인류학』 53(1).
- 조흥윤, 1999,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흥윤, 2004, 『巫와 민족문화』, 한국학술정보.
- 통일부, 2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통일부, 2021, 『북한지식사전』.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 한승훈, 2020, 「전근대 무속 담론과 민속종교에서의 유교와 무속의 관계」, 『민속학연구』 46: 57-85.
- 한인섭, 2005,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죄형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서울대학교 법학』 46(1).
- 무라야마 지준, 1990[1929], 김희경 역, 『조선의 귀신』, 동문선.
- 무라야마 지준, 2014[1932], 최길성·박호원 역, 『조선의 무격』, 민속원.
-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아카시, 1991[1938], 심우성 역,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 Douglas, Mary,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 and Taboo*, London: Routledge.
- Evans-Pritchard, E. E., 1965, *Theories of Primitive Relig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Kendall, Laurel, 1996, "Korean Shamanism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American Anthropology* 98(3).
- Kendall, Laurel, *Shamans, Nostalgias, and the IMF: South Korean Popular Religion in Mo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each, Edmund, 1968, *Dialectics in Practical Relig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mbiah, Stanley J., 2017(1966), "The Form and Meaning of Magical Acts,"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7(3).
- Taussig, Michael, 1993, *Mimesis and Alterity: a Particular History of the Senses*, New York: Routledge.